

2017년도 공증인 사무직원 연수 교육자료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내용 해설

강사 : 한정화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

1.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소개

가. 설립경위

- ▣ 종래 회원 사무소에서 공증실무상 의문이 생길 때 법무부나 협회에 질의를 하여 왔지만 회신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신내용에 공증실무와 맞지 않는 견해가 표출되어 혼선이 초래되기도 하였음.
- ▣ 또한 협회가 회원 사무소의 공증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였고, 회원 사무소 간에 업무처리방식도 상이한 경우가 많았음.
- ▣ 이에 신임 남상우 협회장이 취임하면서 회원 사무소에 직접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무를 개발할 필요성을 적극 주창하여 공증실무상시자문단을 만들게 됨.

나. 공증실무 상담현황

- ▣ 2017년 6월 전국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 밴드(대한공증인협회)를 만들어 회무의 중요사항, 공증질의회신 내용을 올리고 있고, 즉석에서 공증실무 상담을 처리하고 있음.
- ▣ 2017년 7월 1일부터 상담위원 2명이 전국 공증사무소로부터 공증실무와 관련된 상담신청을 받아 1:1 콜백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매 요일별로 지정된 상담위원의 휴대전화번호로 상담신청 문자를 발송하여 상담신청을 하면(상담신청 문자에는 공증사무소 명칭, 상담신청 공증인 및 대표자 성명, 공증실 직통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상담위원이 문자접수후 20분 이내에 상담신청자의 공증실 유선전화로 상담전화를 걸어 신청자의 질의를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문을 실시하고 있음.
 매주 월요일 ~ 화요일 (10:00 ~ 17:00) 010-3101-3476
 매주 수요일 ~ 목요일 (10:00 ~ 17:00) 010-9303-3476
 매주 금요일 (10:00 ~ 16:00) 010-9003-3476
- 임명공증인이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대표번호사만 상담신청 권한을 가지지만 실제 상담 시에는 대부분 공증인이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상담위원과 직접 통화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 상담위원이 즉시 자문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자 쪽에 즉답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3일 이내에 상담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 상담신청자에게 다시 상담전화를 걸어 상담내용을 자문하고, 상담위원 간의 논의 후에도 답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해서는 상담신청자의 양해를 구하고 상담신청자로 하여금 협회에 공식 서면질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상담내용 중 선례로서 의미가 있는 사항은 네이버 밴드에 그때그때 올려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회원사무소에 공문형태로 발송할 예정이며, 사무직원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임.

다. 향후 예정사항

- 현재는 임명공증인이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대표번호사만 상담신청을 할 수 있지만 향후 상담위원이 충원되고 물적 설비가 확충되는 대로 사무직원까지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기존의 ‘공증실무’ 책자의 내용이나 법무부 및 협회의 각종 질의회신, 공증관련 각종 서식, 판례 및 예규 등을 총 망라한 ‘공증 실무제요’(약 1,000페이지 분량 예상)의 발간을 추진 중에 있음. 공증실무상시자문단의 상담결과는 실무제요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 공증실무에 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시 통일되고 합리적인 해석을 위하여 협회 차원의 사전검토절차를 도입할 예정임.

2.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내용

(1) 인도계약공정증서에 있어서 인도사유의 기재

□ 질의 요지

인도계약공정증서 작성시 확정된 일자에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 답변 요지

1. 일반적으로 인도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확정된 일자에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불확정기한의 도래(예: 임차인의 사망 등)나 조건의 성취(예: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추가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재무회계정보를 누락하거나 이를 속이는 경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2. 하지만 공증인법 제56조의3 단서에 따르면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임차건물의 인도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도의무 발생이 공증 이후 6개월 이내의 시점으로 특정되어야 함(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조건의 성취가 없으면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3. 조건의 성취에 따라 인도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정하면 추후 집행문부여(허가) 단계에서 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집행문부여가 불허될 수 있음.

(2) 이사의 자격을 서면결의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 요지

이사회 의사록 인증시, 주주들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아직 미등기 상태인 사람에 대하여 서면결의서의 기재만으로 이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답변 요지

이사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이나 서면결의서를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인증하는 경우에만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이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그렇지 않는 이상 먼저 그 서면결의서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 이사 등재를 한 다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여야 함.

(3) 외국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일부인증의 가부

□ 질의 요지

필리핀에서 있는 근로자가 서명만 하고 스캔하여 보내준 근로계약서를 한국에서 출력하여 사업자가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일부인증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요지

스캔으로 보내준 계약서를 출력하여 법인도장을 날인하면, 그 날인된 서류를 원본으로 봐야할 것임. 근로자가 해외에 있어 일부인증의 필요성이 있고, 촉탁인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다면 일부인증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주주총회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질의 요지**

1.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을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첨부해도 무방한지
2. 의사록에 의장(대표이사)이 날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해도 되는지
3. 의사록에 이사는 막도장 날인해도 되는지

□ **답변 요지**

1. 법인의사록인증사무처리지침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할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음. 이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공증인이 적의 판단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사본을 원본대조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이 예상될 때에는 가급적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주총회의사록 상의 의장의 기명날인은 기관의 자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임.

주주총회의사록상 의장의 날인은 법인인감, 사용인감 또는 개인인감 등 어떠한 도장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에는 반드시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참고자료 1] 의사록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의사록에 날인하는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하였거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등기선례가 있음(상업선례 1-384).

다만 법인의사록인증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증인은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를 통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외에 의사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 의장 및 출석이사 등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을 확인케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후자의 확인에 응하여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함(2016. 7. 7.자 법무부 질의회신의

반대해석). 이는 이사회이사록을 인증할 때 대표이사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임.

[참고자료 2] 2016. 7. 7.자 법무부 질의회신

[참고자료 3] 이사회이사록 인증시 법인인감증명서의 요부

3. 이사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사록상의 날인에 있어서 개인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모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도 반드시 위임장에는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유언공증시 수증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 요지

유언자가 수증자 모르게 유언공증을 하여 두고자 하는데, 수증자와 관련된 서류(예컨대 주민등록등본)를 꼭 제출받아야 하는지

□ 답변요지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증자 모르게 유언공증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 다른 서류로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하면(예컨대 가족관계등록증명서의 등록기준지를 표시 등) 족할 것으로 사료됨.

(6)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질의 요지

1. 차용금이 아닌 채무에 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이자를 붙이는 근거가 무엇인가?
2. 준소비대차공정증서의 경우 어떠한 채무를 소비대차원금으로 하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어야 하는가?

3.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가?

□ **답변 요지**

1. 채무변제계약의 경우 당사자합의에 의한 이자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봐야 함. 예를 들면 물품대금의 경우 이미 변제기가 지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는 경우 이와 결부된 이자 약정은 기존의 물품대금에 대한 일종의 지연손해금의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임.
2.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에는 원래의 채무원인을 다른 채무와 혼동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함.
3.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또는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손해배상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등 구체적인 채무내용에 따라 제목을 바꾸어 기재하는 것도 가능함.

(7) 사단법인의 지부가 촉탁인이 될 수 있는지

□ **질의 요지**

사단법인과는 별개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고유번호 등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법인의 인천지부가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계약서에 관하여 위 지부를 촉탁인으로 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 요지**

사단법인의 단순한 지부는 권리능력이 없어 단독으로 촉탁인이 될 수 없음. 사단법인 자신이 촉탁인이 되어야 함.

(8) 영문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 질의 요지

영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수수료는?

□ 답변

채권양도통지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등과 같이 법률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함이 바람직하고, 영문계약서와 같이 진정성립의 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사서증서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영문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거부할 근거는 없음. 수수료는 국문의 경우와 같음.

(9)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하나의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되는지

□ 질의 요지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하나의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되는지

□ 답변 요지

사용인감계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와 더불어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증이 가능함.

(10) 대표이사의 해임

□ 질의 요지

1.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에 있어서 특별히 제출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2. 해임된 대표이사가 법인인감과 인감카드를 내어주지 않아, 법인 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한지

□ 답변 요지

1.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법

- ▷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함. 이사회는 이사가 각자 소집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이사회 소집 청구, 이사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야 함. 해임된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도 해임하려면 먼저 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 등기를 완료한 다음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으면 됨.
- ▷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직만 해임할 수도 있고 이사직도 함께 해임할 수도 있음.

2.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

- ▷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여야 함.
- ▷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인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면 주주가 별도로 법원에 소집허가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집할 수 있음. 이렇게 소집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인증하려면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주명부나 확인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집권자나 주주총회의 의장이 작성하여야 함.
- ▷ 자신의 해임에 관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향이 있는 대표이사라면 애당초 사임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통상 경험칙에 반함. 따라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 해임안건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 촉탁하였다면 통상 법인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며, 설령 이를 제출하였다더라도 법인인감이 도용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해임 의사록 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해임된 대표이사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의사록에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다른 이사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대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임된 대표이사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4.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해임시 필요서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②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③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등기우편 발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11)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일부철회

□ 질의 요지

건물과 토지2필지를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 유언자가 건물과 토지1필지를 처분한 경우 남아있는 토지 1필지에 대해서 새로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 요지

유언자가 유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한 부동산에 관한 유증만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기존의 유언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새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다만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기 위해 기존 유언을 전부 철회하고, 잔존 토지1필지에 대해 새로 유언하는 것은 가능함.

(12) 전자어음법 적용대상의 판단

□ 질의 요지

자산총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되어 종이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데,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되지 않아 직전 연도 대차대조표가 없다면 어떤 자료로 자산총액을 파악해야 하는지

□ 답변 요지

아직 이와 관련된 법무부지침이 없으므로, 설립당시의 자본금총액 등 신빙성 있

는 자료를 기준으로 공증인이 적의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약속 어음의 발행의 원인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도 가능함.

(13) 영문 사서증서 인증과 국문 번역문

□ 질의 요지

영문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 국문 번역문도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국문 번역문에 번역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한지 여부

□ 답변 요지

공증인은 법령위반,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부여할 수 없음. 공증인이 외국어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 국문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어 사서증서의 내용 중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문 번역문은 사서증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며 번역인의 서명날인은 필요하지 않음

(14)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있어서 연대보증조항

□ 질의 요지

일반적으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연대보증에도 동시에 적용될 텐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경우 연대보증의 내용을 특별히 기재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 답변 요지

민법과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 서면으로 보증채무의 최고액과 보증채무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428조의3(근보증),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제6조(근보증), 제7조(보증기간등) 등 참조

(15) 아파트분양권의 가액산정

□ 질의 요지

아파트 분양권이 유증목적물인 경우 목적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① 분양가액, ② 기납입금의 합계액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답변 요지

아파트분양권의 유증의 목적은 공증 이전에 납부된 분양대금을 유증하려는 것이 라기보다는 향후 유증의 효력발생시까지 납부되는 분양대금액의 과다나 그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분양권 자체를 유증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대금 총액을 유증목적물의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16) 금형목록의 개수와 금형보관증 인증수수료

□ 질의 요지

금형보관증을 인증하는 경우 첨부하는 목록의 개수에 따라 수수료를 1개당 25,750원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답변 요지

금형보관증에 첨부된 여러 목록이 서로 관련되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에 해당 하여 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보아야 함. 다만, 첨부된 목록들이 전혀 관련성이 없고 도저히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2천만100원에 법률 행위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가액을 삼아야 할 것임.

(17) 변제기 도래 전의 집행문부여 가부

□ 질의 요지

변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집행증서의 경우 변제기 이전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 요지

변제기의 도래는 집행개시의 요건(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에 불과하므로 변제기 이전에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음.

(18) 비영리사단법인이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질의 요지

비영리 사단법인도 어음공증을 공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만 가능한지?

□ 답변 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비영리사단법인이 채무자가 되어 집행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정관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19)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겸 조합원의 사망

□ 질의 요지

영농조합법인에서 4인의 이사 중 대표이사 및 이사 각 1명이 사망하고, 이사 중 2명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조합원총회시 첨부서류

□ 답변 요지

조합원 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려면 일반적으로 조합원 명부가 필요함. 위 영농조합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므로 정관상의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권한을 갖는 임원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의 근거법률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은 같은 법이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 16조 제8항) 조합원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탈퇴하고(민법 717조 제1호) 잔여재산의 분배를 할 상황이 됨.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20) 인증한 사서증서 사본 및 부속서류의 열람

□ 질의 요지

투자계약서 인증 촉탁인 중 1인이 상대방 촉탁인의 대리인에게 기망당하여 그 대리인을 고소하려고 한다면 공증사무소에 보관중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열람하려고 하는 사안에서, 촉탁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관해 열람을 허용해도 무방한지?

□ 답변 요지

사서증서 인증서의 사본과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공정증서 작성이나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 경우와 달리 열람 및 등본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관하여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열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사무소의 실무는 허용설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등본발급은 사서증서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가). 법무부도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고, 사서증서 사본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인증서사본) 수수료를 장당 500원으로 책정한 바도 있음(2014. 2. 1. 제정 '공증수수료 등 산정의 기준' 제20조).

열람하려는 부속서류가 신청인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론이 있으나, 공증절차는 소송절차와 달리 촉탁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공동으로 촉탁한 다른 당사자에 관한 서류라 하더라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참고자료 4] 사서증서 인증에 있어서 인증서사본 및 부속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여부

(21) 목적물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각서의 가액산정방법

□ 질의 요지

각서에 목적부동산의 구체적 내역은 기재되어 있으나 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목적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각서의 목적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 답변 요지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3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증서의 내용에 목적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님.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물의 내역을 통해 인터넷으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면 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여도 객관적인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목적가액 산정불능의 경우에 해당함.

(22) 승계집행문 부여시 필요서류

□ 질의 요지

인증받지 아니한 채권양수도계약서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요지

채권자의 승계인이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는 자신이 채권을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 증서가 사서증서일 때에는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공증인법 제46조 제3항, 제31조 제2항).

따라서 승계가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

- ① 채권양수도계약서
- ②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다만 ①이 인증된 것이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고, 양수인이 직접 온 경우에는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됨)
- ③ 양도인 명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제3채무자 명의의 양도에 관한 승낙서
- ④ 위 ③의 양도통지서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 명의의 승낙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가 인증받은 것이어야 함.

(23) 경정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 질의 요지

과거에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가 지난 현시점에 지연손해금 약정만을 추가하는 변경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요지

민사소송법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판결의 명백한 오기 등을 바로잡는 경정제도가 있으나(제211조) 공증인법에는 증서상의 오기 유탈이나 변경의 필요에 대응하여 정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공정증서가 일단 작성되면 그 후에는 쌍방이 요구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수정·변경할 수 없음.

당해 공정증서를 나중에 수정·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증서를 작성하여 잘못된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4조

제4호에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수료를 원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임.

경정공정증서는 새로 제대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작성한 공정증서를 인용하면서 여기에 부가하여 수정·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증서만 작성하는 것임. 수정·변경된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10분의 5의 수수료만으로 기존 공정증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집행문 부여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음. 기존 공정증서의 급부내용을 감액 내지 축소하는 취지의 경정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집행문은 기존 공정증서에 부여하고 채무자는 경정공정증서의 내용으로 채권자의 집행에 관하여 다투면 되지만, 기존 공정증서의 급부내용을 증액 내지 확장하는 취지의 경정공정증서가 작성되면 기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채권자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음. 질의한 사안의 경우처럼 지연손해금 약정을 새롭게 추가하는 경우라면 경정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경정공정증서만으로는 전체 계약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정본 및 집행문의 작성방식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가급적이면 새로 정식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4) 공정증서 원본 및 부속서류의 전자복사

□ 질의 요지

촉탁인이 공정증서 원본 및 부속서류 일체의 전자복사를 요청하고 있는바, 열람이나 등본발급이 아닌 전자복사만 해주어도 무방한지

□ 답변 요지

촉탁인은 증서의 원본이나 부속서류에 관하여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열람의 확장된 내용으로서 증서 원본이나 부속서류의 전자복사를 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그런데 단순히 전자복사를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복사본이 증서 원본을 전자복사한 것이라는 확인문구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서명을 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50조 이하의 등본교부에 관한 제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즉 공정증서에 관해서는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와 같이 “당 사무소가 보관중인 인증서 사본을 전자복사한 것이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 사본을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공증인법에 따른 등본교부를 하여야 할 것임.

(25) 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방법

□ 질의 요지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아직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의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방법

□ 답변 요지

정본에 부착되어 있는 종전의 집행문을 제거할 필요 없이 여기에 덧붙여 승계집행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여함.

(26)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

□ 질의 요지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이후 신임 대표이사가 의장으로 주주총회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주주명부와 확인서도 모두 신임 대표이사의 명의로 작성하였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을 부여하여도 무방한지

□ 답변 요지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이라면 당연히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

기가 만료되었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보유한다 할 것임. 따라서 종전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는바, 신임 대표이사가 의사록상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주주명부와 확인서도 작성하였다면 일응 그 적법성이 의심이 되는 상황임. 다만 종전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종전 대표이사가 총회에 불출석하여 총회의 결의로 신임 대표이사가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라면 인증을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임.

(27) 상거래로 인한 공정증서 작성과 채무자의 대리

□ 질의 요지

집행증서작성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이 채권자인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요지

일반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거래의 내용을 특정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대부업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채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인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상거래를 가장한 대부계약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채권자나 그 대리인은 상거래 발생의 원인서류를 참고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5] 채무자의 대리촉탁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참고자료 1] 의사록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법인의사록인증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

공증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회의의 종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창립총회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의장과 출석한 이사
주식회사의 발기인총회	출석한 발기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공익법인의 이사회	출석한 이사와 감사
협동조합의 총회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사단(재단)법인 이사회 협동조합 이사회 영농조합법인	(정관)

2.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이사의 범위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사에는 주주총회 당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출석한 이사가 임기중에 있을 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또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로써의 권리의무가 있는 상태라면 출석한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후임이사가 선임되고 즉석에서 그 이사가 취임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임이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후임이사로 미리 선임되었을 뿐 임

기가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는 이사는 비록 출석하였더라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감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의사록에 감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였더라도 의사록 인증시 감사가 인증촉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자가 아닌 주주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의사록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참석한 이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중 신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 또는 의장 또는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더라도 유효한 의사록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의장이나 다른 이사가 의사록상 그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고 대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2] 2016. 7. 7.자 법무부 질의회신

- 법인 의사록의 인 증은 사서증서 인 증의 한 유형으로서 ‘의사록을 작성한 자의 서명·날인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 되며(공증인법 제57조),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법인 의사록의 인 증시 특별히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 따라서 공증인이 법인 의사록을 인 증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의사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로 하여금 서명·날인의 진정 확인
 2. ‘의결 정족수 이상의 자’를 통해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 확인

유형	촉탁인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자	기명날인·서명한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의결권자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
이사회	의사록 작성자	기명날인·서명한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의결권자	의결정족수 이상의 이사

-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 증사무 처리지침’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은 위와 같은 공증인 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 법인 의사록을 대리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대리인으로부터 위 의사록 작성자 및 의결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의사록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인 증의 촉탁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3] 협회의견 - 이사회이사록 인증시 법인인감증명서의 여부

1. 질의의 요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를 소집한 후 그 이사회에서 종전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는데, 해임된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의 날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인인감증명서의 제출 없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만의 촉탁으로 이사회이사록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협회의 의견

상법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제390조 제1항) 소집권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도 다른 이사는 언제든지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이사회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사회는 다른 이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소집될 수 있고, 그 이사회에서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통상 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에 있어서 법인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주주명부에 의하여 의결정족수의 기초가 되는 주주의 인적 현황 및 주식보유비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회이사록의 경우에는 이사들의 인적 구성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그 의결권도 상법상 1인 1표의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법인의사록인증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확인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27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이사회이사록의 작성권자가 법인 자신이라고 해석될 경우 법인의 인증 촉탁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장 및 법

인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은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서로서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대표이사가 소집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다른 이사의 소집으로 개최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 의사록 인증에 있어서 촉탁인 자격은 이사 개인 또는 감사 개인이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증실무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도 무방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 인감증명서의 제출만으로도 대표이사 개인의 촉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통용되는 관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굳이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4] 협회의견 - 사서증서 인증에 있어서 인증서사본 및 부속 서류의 열람·등사의 허용여부

1. 질의의 요지

가.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원본 및 부속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실무상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허용하는 근거, 실무상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 공증인법 제57조 제4항에는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등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보존해야 할 실무적 필요성이 있는지

2. 협회의 의견

가. 공증인법은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해서는 원본의 열람을 허용하는 규정(제43조)을 두고 있지만 사서증서 인증에 관해서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들에 비추어 볼 때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사서증서 사본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촉탁인이나 그 이해관계인도 보존되어 있는 사서증서 사본을 열람·등사할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공정증서나 정관, 법인의사록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사본을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사서증서 인증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4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증인법 제43조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 사본이나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증사무소들은 실무상 사서증서 사본이나 부속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공증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르면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사본 및 부속서류를 보존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위 보존된 서류는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됩니다. 공증사무소들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비밀누설금지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의 문서보관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공증인법 개정을 통해 굳이 사서증서 사본 및 부속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한 것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공증인법이 사서증서 인증에 관하여 제43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사서증서 사본에 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기보다는 단순한 입법의 불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 공증인법이 사서증서 인증에 관하여 제43조를 준용하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 제57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이라 공증인에게 사서증서의 사본을 보존할 의무가 없어 열람·등사를 허용할 대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공증인법 제57조 제4항이 신설되어 공증인이 사서증서 사본 및 부속서류를 보존하게 되면 서 마땅히 제43조의 규정을 사서증서 인증에도 준용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4) 사서증서의 사본을 보존하는 제도는 사서증서 인증을 이용하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증사무소가 사서증서 사본을 보관하면 사서증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대비가 되고 원본의 위·변조의 위험도 줄어들 뿐 아니라 나중에 쉽게 위·변조 전의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사서증서를 인증받은 경우 그 타인은 이해관계자로서 보존되어 있는 사서증서 사본을 열람하여 촉탁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자는 사서증서의 사본 및 부속서류를 공증사무소가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무부에서도 질의회신 등을 통해 사서증서 사본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2014. 2. 1. 제정한 지침 ‘공증수수료 등 산정의 기준’ 제20조에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공증인이 보관 중인 인증서 사본을 전자복사하여 교부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1장당 5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서증서 사본을 등사하여 주는 경우 그 수수료까지 책정한 바 있습니다.

(6) 가사 공증인법 제43조를 사서증서 인증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열람청구권이나 그 사본의 교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법률적 근거는 공증인법 제5조입니다. 동조에 따르면,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지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공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비밀준수의무 있지만 촉탁인이 허락한 경우는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공증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공증인이 공증과정에서 알게 된, 촉탁인에게 비밀로 할 이익이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사서증서의 내용과 촉탁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의 내용은 당연히 그에 속합니다. 한편 촉탁인의 동의가 있을 때 공증인의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은 촉탁인에게 그 정보의 이용 및 처분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열람청구권이나 등본교부청권은 촉탁인의 이와 같은 권리로부터 당연히 도출됩니다.

문제는 수인의 촉탁인이 공동으로 촉탁할 때 일방 촉탁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도 상대방 촉탁인에게 열람청구권이나 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생각건대 공증절차는 대심구조인 소송절차와 달라 사실상 일방 당사자에 관한 서류일지라도 법적으로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촉탁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 촉탁에 의하여 인증이 된 경우 다른 공동촉탁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도 열람이나 등본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공증인법이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 사본이나 그 부속서류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43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유추 적용하여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사서증서 사본이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 공증사무소의 실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서증서 인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사서증서의 사본 및 부속서류가 공증사무소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서증서 인증제도의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법무부가 공증사무소의 사서증서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었던 것도 사서증서 사본 및 부속서류가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공증사무소가 사서증서 사본을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 사서증서 인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증인서류보존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는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증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나 기대수준에 비추어 최소한의 보존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공증사무소들의 보존시설의 한계 등으로 문제가 있겠으나 향후 사서증서 사본이나 부속서류의 전자보관이 널리 이용된다면 보존기간을 보다 장기간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자료 5] 채무자 쪽의 대리촉탁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1. 채권자가 대부업자 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 원인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대부계약)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공증을 하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나. 원인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도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원인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도 무이자부라면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변제기 전의 이자 약정이 없다면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다만, 무이자지만 변제기를 증서 작성 직후로 정하여 지연손해금 약정으로 이자약정을 대신하려는 경우로 판단되면 지침 적용대상임). 예컨대, 주류회사가 자신들이 주류를 납품하는 거래처에게 이자 없이 금전을 대부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주류업체측이 거래처를 대리하여 공증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또 어음공증을 하는 경우라도 제출된 원인증서(차용증서등) 상에 이자약정이 없고 차용금액이 어음의 액면금과 일치한다면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집행증서 작성을 처음 촉탁하는 경우

채권자측이 본 사무소에 처음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라면 아직 위 지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대부업자란 업무처리과정에서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집행증서를 반복적으로 촉탁하는 자로 정의되는데, 단 1회의 촉탁으로는 아직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권자측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가. 대리인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임직원인 경우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자신이 채무자의 가족이거나 법인인 채무자의 임원 또는 직원인 사실을 소명하면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대리인이 같은 증서의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같은 집행증서 상의 채무자, 발행인 또는 연대보증인 등의 지위를 겸하여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측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